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12. 29.
시민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1월 2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7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1997년 12월 23일 제53회(정기회) 제13차 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폐기물의 분리배출·재활용 위탁처리규정 등이 신설되고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단가 인상으로 규격봉투의 가격 조정이 필요하여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음식물폐기물 용어·배출방법 신설
-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폐기물용 보관용기 시설·설치 신설
- 음식물폐기물용 규격봉투 신설
- 대형폐기물수수료 징수체계 변경(현금 → 수입증지)
- 폐기물 무단투기자 신고시 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
- 제작단가 인상,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가격에 미반영된 반입료의 일부 반영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유재한)

본 조례안은 종전의 생활폐기물중 분리배출 및 수거해야 할 폐기물에 대하여 음식물폐기물의 용어의 신설과 배출방법 및 분리수거를 위한 규격봉투의 색상과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환경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감량화를 위한 감량화기기 설치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에는 음식물폐기물용 보관용기 및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제16조와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한 지침을 시달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한 내용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징수체계를 은행납부에서 수입증지 납부로 변경하는 안과 규격봉투 제작단가의 인상 안에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가격에 지금까지 김포매립지 반입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구에서 부담하였던 것을 김포매립지 반입료의 45% 수준을 반영시키기 위한 것임.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의 일부가 신설되었으며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단가의 인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규격봉투의 단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原案 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1

제출년월일 : 1997. 11. 2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 안 이 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97. 7. 19)으로 음식폐기물의 분리배출·재활용위탁처리 규정 등이 신설되고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단가 인상으로 규격봉투 가격 조정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 요 골 자

◦ 음식물류폐기물 용어 신설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신설
◦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폐기물 보관용기 시설·설치 신설
◦ 음식물폐기물용 규격봉투(오렌지색) 신설
◦ 대형폐기물수수료 징수체계 변경 (현금 → 수입증지)
◦ 폐기물 무단투기자 신고시 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
◦ 제작단가 인상,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가격에 미 반영된 반입료의 일부 반영

3.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이견없음
라. 따로붙임 :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류" (이하 "음식물폐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제8조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음식물폐기물 등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도시 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5층 이상의 아파트 및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은 당해 건축물의 준공 전에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 사업장용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음식물 폐기물용 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폐기물용규격봉투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 본문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용규격봉투는 녹색, 음식물폐기물용규격봉투는 오렌지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중 "반입수수료(이하 "처리비"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반입수수료(이하 "처리비"라 한다)"를 "처리비"로 하며, "사업장폐기물에 대한"을 삭제한다.

제26조 제2항중 "처리비"는 앞에 "제작비와"를 삽입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제작비와 처리비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를 공급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수시분으로 고지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징수하고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배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중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3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폐기물 무단투기자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 제7항 <별표1>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3. 병류"란 및 "5. 플라스틱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6. 음식물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병 류	- 음료수병, 기타병 - 농약병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색깔별로배출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수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배출
5. 플라스틱류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뚜껑 및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축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재조자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 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 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6. 음식물류	- 조리전 음식물폐기물 - 조리후 음식물폐기물	- 비닐·금속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분을 최대한 제거후 배출 - 음식물폐기물 전문중간처리업자, 재이용하는자, 재활용사업자에게 직접 배출 또는 감량화기기 설치 운영

제14조 제4항 <별표2> 규격봉투 가격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6조 제2호 <별표3>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 <별표5>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중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주 > (1) 기타 특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은 ㎥당 6,100원 부과

(2) 열거된 품목에 유사한 품목은 열거품목 수수료에 준하여 부과

(3) 일반 가정배출 대형폐기물(사업장 배출분은 제외)을 집하장에 주민이 직접 운반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50%를 면제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음식물폐기물 규격봉투의 사용개시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사용개시 공고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별표 2]

규격봉투 가격 (제14조 제4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제작비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비	판매이윤	판매가
생활폐기물규격봉투	5ℓ			10	5	90
	10ℓ			20	10	180
	20ℓ			40	20	360
	30ℓ			58	30	540
	50ℓ			84	50	900
	75ℓ			137	75	1,350
	100ℓ			177	100	1,800
사업자용규격봉투	10ℓ			50		210
	20ℓ			100		420
	50ℓ			254		1,080
	75ℓ			382		1,610
	100ℓ			507		2,150
특수규격봉투	50ℓ			1,324	100	2,430

비 고 : 1. 규격봉투에 포함된 처리비 및 제작비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등에서 고시하는 반입료등이 변동될 경우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함

2. 음식물폐기물용 봉투의 용량별 봉투가격은 생활폐기물용 및 사업장용 규격봉투 가격과 동일

[별표 3]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 (제16조 제2호 관련)

용량(ℓ)	용 도
5ℓ	생활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1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2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30ℓ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5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기타생활폐기물용, 공공용
75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100ℓ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별지 제8호 서식]

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주 소			

배출내역	폐기물명	규 격	수 량	배출원인	재 사 용 가능여부
					· 가 능 ( ) · 불가능 ( )

배 출 예 정 일		배 출 장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첨 부 란	

[별지 제9호 서식]

대형폐기물 접수 · 처리 대장

연번	접수 번호	신고인 인적사항				신고 내역					처리 내역		신고필증 수불			결재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배출일	장소	처리일	처리방법	수령	사용	잔매	담당	계장	동장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현 행 과 같 음) 2.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개 정 안
3.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써 영 제3조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3. (현 행 과 같 음)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중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4. (현 행 과 같 음)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수토사를 제외한 폐기물로써 1회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현 행 과 같 음)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개별계량과 품목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6. (현 행 과 같 음)
7.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현 행 과 같 음)
8. (신 설)	8. "음식물폐기물" (이하 "음식물폐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현 행 과 같 음)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기타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현 행 과 같 음)
1. 종량제폐기물 :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 사용	1.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개 정 안
2. 연 탄 재 :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 등 별도 용기에 담아 배출	2. (현 행 과 같 음)
3. 재활용 가능품 : "별표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	3. (현 행 과 같 음)
4. 대형폐기물 : 배출 3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관할 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	4. (현 행 과 같 음)
(신 설)	5. 음식물폐기물등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5. 기타생활폐기물 : 배출 3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폐기물의 종류·배출량 등을 관할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	6.기타생활폐기물 : ·····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5층 이상의 아파트 및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은 당해 건축물의 준공 전에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현 행 과 같 음)
(신 설)	③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
④ 구청장은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등) ① 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사업장용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등) ① 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사업장용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음식물폐기물용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②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폐기물용규격봉투에는 음식물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생활폐기물용규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용규격봉투는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현 행 과 같 음) 1. .... 사업장용규격봉투는 녹색, 음식물폐기물용규격봉투는 오렌지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이하 "처리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이하"처리비"라 한다)를 납부하는 경우 ..... ② .....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처리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6조(종량제 수수료) ①규격봉투 가격은 수집·운반수수료, 제작비, 판매이유, 처리비로 구성한다. ②규격봉투 판매대금은 공급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처리비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처리비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수시분으로 고지·수납한다.	제26조(종량제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규격봉투 판매대금은 공급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제작비와 처리비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규격봉투의 가격에 포함된 제작비와 처리비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를 공급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수시분으로 고지한다.
제27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 수수료)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품목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제27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 수수료) ① (현 행 과 같 음) 1. (현 행 과 같 음) 2.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 배출자에게 징수하며, 수입중지를 구입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배출신고서에 첨부 하여야 하며,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 처리비는 배출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부과·징수하여 구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 한다.
제32조(과태료) 구청장이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과태료등) ①구청장이 ....
(신 설)	②폐기물 무단투기자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 2조7항 ≪별표1≫중	조례 2조7항 ≪별표1≫중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3. 병류	- 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생 략---- ----------
4. ----	---- 생	략--------
5.플라스틱류	- PET 병 - 합성수지 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생 략----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3. 병류	- 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색깔별로 배출 - (현행과 같음)
4. (현	행 과	같 음)
5. 플라스틱류	- PET병 - 합성수지 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뚜껑 및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물로 헹구어 배출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례 2조7항 ≪별표1≫중 종 류 / 품 목 / 배 출 요 령 6. 음식물류 / - 조리전 음식물 폐기물 / - 비닐·금속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분을 최대한 제거후 배출 - 조리후 음식물 폐기물 / - 음식물폐기물 전문중간처리업자·재이용하는자·재활용사업자에게 직접 배출 또는 감량화기기 설치운영
<별표2> 규격봉투 가격 (제14조제4항 관련) 생 략 비고 : 1. 규격봉투에 포함된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하는 반입료가 변동될 경우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함. (신 설)	<별표2> 규격봉투 가격 (제14조제4항 관련) (현행과 같음) 비고 : 1. 규격봉투에 포함된 처리비 및 제작비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등에서 고시하는 반입료 등이 변동될 경우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함 2. 음식물폐기물용 봉투의 용량별봉투가격은 생활폐기물용 및 사업장용 규격봉투 가격과 동일

현 행

<별표2>

규격봉투 가격 (제14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제작비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비	판매 이윤	판매가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5ℓ			0	5	80
	10ℓ			0	10	160
	20ℓ			0	20	320
	30ℓ			0	29	480
	50ℓ			0	48	800
	75ℓ			0	72	1,200
	100ℓ			0	97	1,600
사업장용 규격봉투	10ℓ			50		210
	20ℓ			100		420
	50ℓ			254		1,070
	75ℓ			382		1,600
	100ℓ			507		2,140
특수 규격봉투		현 행 과 같 음				

비고 : 사업장용 규격봉투에 포함된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하는 반입료가 변동될 경우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함

(신 설)

개 정 안

<별표2>

규격봉투 가격 (제14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제작비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비	판매 이윤	판매가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5ℓ			10	현행과 같음	90
	10ℓ			20		180
	20ℓ			40		360
	30ℓ			58	30	540
	50ℓ			84	50	900
	75ℓ			137	75	1,350
	100ℓ			177	100	1,800
사업장용 규격봉투	10ℓ			현 행 과 같 음		
	20ℓ					
	50ℓ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80
	75ℓ					1,610
	100ℓ					2,150
특수 규격봉투		현 행 과 같 음				

비고 : 1. 규격봉투에 포함된 처리비 및 제작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등에서 고시하는 반입료 등이 변동될 경우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함

2. 음식물폐기물용 봉투의 용량별 봉투가격은 생활폐기물용 및 사업장용 규격봉투 가격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16조제2호 관련)	<별표3>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16조제2호 관련)

용량(ℓ)	용 도
5	생활폐기물용
10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20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30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5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기타생활폐기물용, 공공용
75	생활폐기물용,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10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용량(ℓ)	용 도
5	생활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1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2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30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5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기타생활계폐기물용,공공용
75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10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음식물폐기물용, 공공용

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 <별표5>중

생 략

<주> (1) 기타 특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은 ㎥당 6,100원 부과
(2) 열거된 품목에 유사한 열거품목 수수료에 준하여 부과
(신 설)

(신 설)

(신 설)

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 <별표5>중

현 행 과 같 음

<주> (1) 기타 특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은 ㎥당 6,100원 부과
(2) 열거된 품목에 유사한 품목은 열거품목 수수료에 준하여 부과
(3) 일반가정배출 대형폐기물(사업장 배출분은 제외)을 집하장에 주민이 직접 운반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50%를 면제할 수 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참조)

대형폐기물 접수·처리 대장
(별지 제9호서식 참조)